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보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904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7.

발 의 자:최보윤·서천호·김미애

정성국 · 김선교 · 박수영

김상훈 · 한지아 · 최수진

김승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세계관광기구(UNWTO)에서 「모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 지침」을 제정하는 등 장애인, 고령자와 같은 취약 계층을 포용하는 무장애관광(Barrier-free tourism)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정책 의제로 확산되고 있음.

그런데 우리나라 무장애 관광에 대한 체감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2022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국내여행에서 느끼는 불편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"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부족"(74.1%)인바,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.

이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무장애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,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2제2항제6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의2제2항제6호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0조의2(장애인정책종합계획)	제10조의2(장애인정책종합계획)		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2		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	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6.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		
	<u>사항</u>		
<u>6.</u> (생 략)	<u>7.</u> (현행 제6호와 같음)		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		